

2026년도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시행 공고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107호)」 제6조에 따라 2026년도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시행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연구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3월 5일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 경 훈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장 이 황 원

1. 인증제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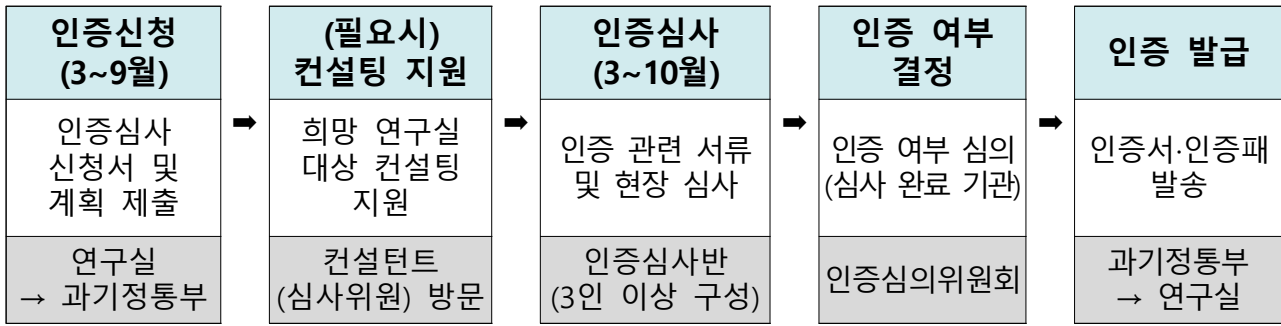
□ 목적 및 정의

- 대학·연구기관 등의 연구실 안전관리 역량 강화 및 표준모델 발굴·확산을 위하여 안전관리 수준, 활동 등이 우수한 과학기술 분야 연구실에 전문가의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 관련 근거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8조(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의 운영) 및 제21조(인증표시의 활용),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신청 등)
-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

□ 인증절차



2. 인증신청

□ 신청대상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대상 연구실 중 안전관리 우수연구실로 인증 또는 재인증*을 받으려는 연구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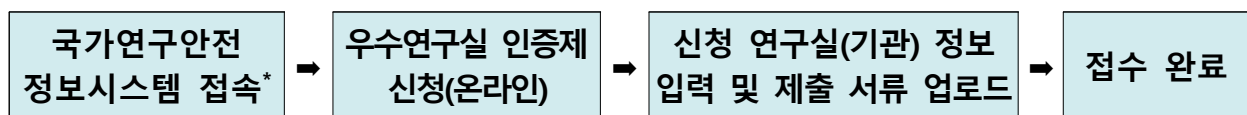
* 재인증은 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인증 유효기간의 만료일 60일 전까지 신청

※ 인증 유효기간 : 인증일(공고일)로부터 2년

□ 신청기간 : '26. 3. 5.(목) ~ 9. 30.(수)

□ 신청방법 :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www.labs.go.kr)에서 신청

○ 신청절차



*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 미가입자의 경우 회원가입 필요

○ 제출서류(5종)

- ①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재인증 신청서 (첨부1)
- ② 연구활동종사자 및 연구개발과제 수행 현황 (첨부2)
- ③ 주요 연구장비·안전설비 및 위험물질 보유 현황 (첨부3)
- ④ 연구실 레이아웃 배치도 (첨부4)
- ⑤ 참여 실행서약서 (첨부5)

3. 인증심사 절차

□ 서류검토 : 제출서류 확인 및 서류 보완 요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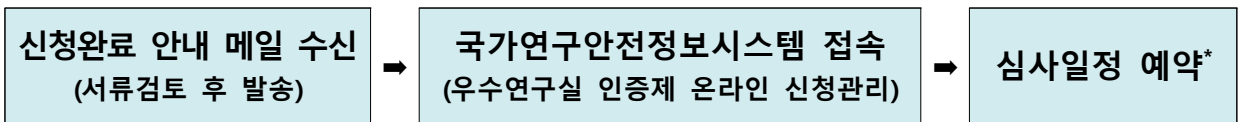
※ 서류검토 완료 후 신청인에게 '신청완료 및 심사일정 예약' 안내 메일발송

□ 컨설팅 지원(필요시) : 컨설팅 신청 희망 연구실을 대상으로 인증 취득을 위한 무료 안전관리 기술 지도·지원

※ 자세한 사항은 「2026년도 연구실 안전관리 컨설팅 지원사업 공고」 참고

□ 심사일정 예약 : 신청기관의 연구주체의 장, 연구실책임자 등 연구실 구성원의 일정을 고려하여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

○ 심사일정 예약절차



* 심사 일정은 예약일 기준 3주 이후부터 선착순으로 선택 가능하며, 일별 심사 가능 기관 수 초과 시 원하는 일정 선택이 제한될 수 있음

□ 현장심사 : 신청 연구실 특성에 맞는 인증심사반(3인 이상)을 구성하여 연구실 인증심사 실시

○ (심사분야) 규정 [별표 1]의 인증심사 기준(필수 이행항목, 분야별 심사기준)

① 필수 이행항목 : 연구실 안전환경 시스템분야(2개 항목),
연구실 안전환경 활동 수준분야(2개 항목) 등

② 분야별 심사기준 : 연구실 안전환경 시스템분야(12개 항목),
연구실 안전환경 활동 수준분야(11개 항목),
연구실 안전관리 관계자 안전의식분야(4개 항목) 등

※ 재인증 심사의 경우 연구실 안전관리 관계자 안전의식분야 4개 항목 중 2년 전 인증심사 때와 동일한 관계자에 한하여 심사를 생략할 수 있음

- (심사방법) 심사기준에 따라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현장심사 진행 후 인증심사 결과서(규정 [별지 1]) 작성

□ 인증여부 결정 및 인증서 발급

- 인증심사 결과 ①필수 이행항목이 모두 적합이며, ②분야별 심사 기준 3개 분야 모두 100분의 80이상 득점한 경우, 인증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인증 여부 결정
- 인증 결과는 과기정통부 홈페이지 및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에 공고하고, 인증서·인증패 발급·전달

4. 인증 지원사항 및 유의사항

□ 인증 지원사항(인센티브)

- 인증 취득 연구실 중 최우수연구실 및 개인 등을 선정*하여 장관 표창 및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장상 수여 예정

* '25년 9~11월 현장심사 완료 및 '26. 8. 31.까지 현장심사가 완료된 연구실을 대상으로 '26년도 최우수 연구실을 선정하여 연구실안전주간행사(11월 예정)에서 시상 예정

- 연구실 안전유공자 표창 대상자 심사 시 가점 부여
- 연구실 안전환경(인프라) 개선 지원기관 심사 시 가점 부여
- 인증취득 연구실 안전점검(정기점검) 면제
 - ※ 인증 유효기간의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12월 31일까지
-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서 및 인증패 수여
-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인증취득 연구실 대외 공표

□ 유의사항

- 인증심사 관련 세부 기준은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107호)」 참고
 - ※ 2021.12.31. 개정된 규정으로 심사기준 적용
- 인증연구실 구축 방법, 인증심사 준비사항 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한 ‘우수 인증연구실 견학’, ‘인증 실무자 교육’ 등 추진(5~8월 중 예정)
 - ※ 추후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해 안내 예정(공지 참조)
- 제출서류 등의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 책임이며, 인증서 발급 이후라도 제출서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 인증을 무효로 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양식 참고

5. 문의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044-202-4868 / qusgkdan1@korea.kr
-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043-240-6418 / syoung3574@kribb.re.kr

6. 첨부문서

- 첨부 1.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재인증 신청서
- 첨부 2. 연구활동종사자 및 연구개발과제 수행 현황
- 첨부 3. 주요 연구장비·안전설비 및 위험물질 보유현황
- 첨부 4. 연구실 레이아웃 배치도(예시)
- 첨부 5.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참여 실행서약서

작성방법

아래에서 설명하는 항목은 해당 방법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기관명: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등에 적혀 있는 기관 명칭
- ② 사업자등록번호: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에 적혀 있는 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관할 법원 등기소에서 발급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적혀 있는 등록번호)
- ③ 대표자명: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등에 적혀 있는 대표자 성명
- ④ 소재지: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등에 적혀 있는 소재지
- ⑤ 담당자: 기관의 인증 업무 담당자의 부서명, 직책, 성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 ⑥ 연구실 현황: 인증신청 연구실의 연구실명, 연구실책임자의 성명·직책·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및 연구활동종사자 수

처리절차



[첨부 2]

연구활동종사자 및 연구개발과제 수행 현황

기관명		연구실명		총 인원	명
No	직 위	성 명		비 고	
1	교수	ooo		연구실책임자	
2	박사수료	ooo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3	석사과정	ooo		연구활동종사자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 5개 이내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No	연구과제명	연구 기간		비 고
		시작일	종료일	
1	ooo	2020년	2025년	내부연구과제
2	ooo	2021년	2026년	외부수탁과제
3	ooo	2020년	2027년	외부수탁과제
4				
5				

[첨부 3]

주요 연구장비·안전설비 및 위험물질 보유현황

※ 주요 위험요인을 중심으로 각 10개 이내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No	연구장비·안전설비명(모델명)	구입연도	사용용도	비 고
1	○○○장비	2022년	주요용도	
2	○○○장비	2000년	주요용도	'25년 4월 폐기 예정
3				
4				
5				
6				
7				
8				
9				
10				

No	위험물질명	구입연도	사용용도	비 고
1	○○○	2000년	주요용도	
2	○○○	2000년	주요용도	'25년 5월 폐기 예정
3				
4				
5				
6				
7				
8				
9				
10				

연구실 레이아웃 배치도

연구실 레이아웃 배치도



연구공간·사무공간 분리여부

※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분리	√	미분리	
----	---	-----	--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참여 실행서약서

2026년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이하 '인증제')」에 참여하는 대표자(기관장 및 연구실책임자)인 본인은 연구실 안전환경 수준 향상과 인증 선도모델 구축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 대표자는 인증제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연구실 안전 환경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 ▣ 대표자는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며, 컨설팅, 교육 등에 필요한 조사, 출입, 기록의 열람, 면담 등에 적극 협조한다.
- ▣ 대표자는 본 사업과 관련한 활동으로 알게 된 비밀사항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하며, 인증제 수행에 따라 생성된 자료에 대한 요청 시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 ▣ 대표자는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의 안정적 정착 및 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2026년 월 일

기관명 :

기관장 (인)

연구실책임자 (인)

인증심사 기준

1. 인증심사 필수 이행항목

인증심사 분야	필수 이행항목	비고
연구실 안전환경 시스템분야	1. 연구실 안전환경 방침 및 목표, 추진계획이 수립되어있어야 한다.	‘적합’ 또는 ‘부적합’ 여부 판단
	2.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적 이행사항을 준수하고 있어야 한다. ※ 연구실책임자의 지정·운영(법 제9조),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및 준수 등(법 제12조), 안전점검의 실시(법 제14조),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법 제15조), 보험가입(법 제26조), 교육·훈련(법 제20조) 등	‘적합’ 또는 ‘부적합’ 여부 판단
연구실 안전환경 활동 수준분야 [세부항목 중 해당사항 없는 경우 제외]	1. 연구실과 사무실이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 ※ 저위험연구실은 제외한다.	‘적합’ 또는 ‘부적합’ 여부 판단
	2. 11개 심사항목 중 8개 이상의 항목에 대해 심사가 가능하여야 한다.	‘적합’ 또는 ‘부적합’ 여부 판단

2. 분야별 인증심사 기준

인증심사 분야	분야별 총점	인증심사 세부항목	배점
연구실 안전환경 시스템분야	30	운영법규 등 검토	3
		목표 및 추진계획	3
		조직 및 업무분장	3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3
		교육 및 훈련, 자격 등	3
		의사소통 및 정보제공	2
		문서화 및 문서관리	2
		비상 시 대비·대응 관리 체계	3
		성과측정 및 모니터링	1.5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1.5
		내부심사	3
		연구주체의 장의 검토 여부	2
연구실 안전환경 활동 수준분야 [세부항목 중 해당사항 없는 경우 제외]	50	연구실의 안전환경 일반	5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상태 확인	2
		연구실 안전교육 및 사고 대비·대응 관련 활동	7
		개인보호구 지급 및 관리	4
		화재·폭발 예방	4
		가스안전	5
		연구실 환경·보건 관리	5
		화학안전	5
		실험 기계·기구 안전	4
		전기안전	4
		생물안전	5
연구실 안전관리 관계자 안전의식 분야	20	연구주체의 장	5
		연구실책임자	5
		연구활동종사자	5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자	5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심사(자체심사) 결과서

심사일자	년 월 일
기관명	
연구실명	
심사결과	총점 : 점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심사위원	(서명)
	(서명)
	(서명)
확인자(간사)	(서명)

- ※ 심사 수행 방법
1. 심사 대상 : 인증·재인증 신청 연구실
 2. 각 분야별 1인 총 3인으로 심사위원 구성·심사
 3. 각 분야별 세부항목에 대한 배점기준에 따라 심사 후 총점 기재
 4. 각 분야별 세부항목에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하고, 심사점수는 각 분야별 심사 기준점으로 환산하여 기재
- $$\text{환산점수} = \text{해당분야총점} \times \left(\frac{\text{해당항목평가점수의합}}{\text{해당분야총점} - \text{미해당항목배점}} \right)$$
5. 분야별 최종점수는 소수점 이하 3자리에서 반올림
 6. 필수 이행항목은 심사 후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기재

1. 인증심사 개요

심사명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인증심사		
심사일	20년 월 일	심사위원	(서명)
인증적합 기준	① 필수 이행항목 “적합”판정 ② 3개 분야별 80%이상 득점 연구실		(서명)
			(서명)

2. 일반현황

기관명		연구주체의 장	
소재지			
기관분류	<input type="checkbox"/> 대학교 <input type="checkbox"/> 연구기관 <input type="checkbox"/> 기업부설(연) <input type="checkbox"/> 연구개발전담부서 <input type="checkbox"/> 기타		
연구실명		연구활동종사자수	
연구실책임자		전화번호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안전관리자)		전화번호	

3. 인증심사 결과

1. 본 심사는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인증심사 기준에 따라 수행되었습니다.

2. 인증심사기준의 적합성

가. 연구실 안전환경 시스템분야 총점 : 점 적합 부적합

나. 연구실 안전환경 활동 수준분야 총점 : 점 적합 부적합

다. 연구실 안전관리 관계자 안전의식 분야 총점 : 점 적합 부적합

3. 인증심사 결과

필수 이행항목 : 적합 부적합

심사총점 : 점 적합 부적합

4. 본 심사결과(적합한 경우) 인증심의위원회 인증심의 대상으로 추천됩니다.

4. 인증 분야별 심사결과

가. 연구실 안전환경 시스템분야

항 목	심사점수
합 계	(총 점 : 30점)
1. 운영법규 등 검토	_____
2. 목표 및 추진계획	_____
3. 조직 및 업무분장	_____
4.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_____
5. 교육 및 훈련, 자격 등	_____
6. 의사소통 및 정보제공	_____
7. 문서화 및 문서관리	_____
8. 비상 시 대비·대응 관리체계	_____
9. 성과측정 및 모니터링	_____
10.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_____
11. 내부심사	_____
12. 연구주체의 장의 검토 여부	_____

필수 이행항목

세부 항목	심사결과
1. 연구실 안전환경 방침 및 목표, 추진계획이 수립되어있어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2.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적 이행사항을 준수하고 있어야 한다. ※ 연구실책임자의 지정·운영(법 제9조), 연구실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및 준수 등(법 제12조), 안전점검의 실시(법 제14조),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법 제15조), 보험가입(법 제26조), 교육·훈련(법 제20조) 등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나. 연구실 안전환경 활동 수준분야

항 목	심사점수
합 계 (총 : 50점)	_____
1. 연구실의 안전환경 일반	_____
2.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상태확인	_____
3. 연구실 안전교육 및 사고 대비·대응 관련 활동	_____
4. 개인보호구 지급 및 관리	_____
5. 화재·폭발 예방	_____
6. 가스안전	_____
7. 연구실 환경·보건 관리	_____
8. 화학안전	_____
9. 실험 기계·기구 안전	_____
10. 전기안전	_____
11. 생물안전	_____

필수 이행항목

세부 항목	심사결과
1. 연구실과 사무실이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 ※저위험연구실은 제외한다.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2. 11개 심사항목 중 8개 이상의 항목에 대해 심사가 가능하여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다. 연구실 안전관리 관계자 안전의식 분야

항 목	심사점수
합 계 (총점: 20점)	_____
1. 연구주체의 장	_____
2. 연구실책임자	_____
3. 연구활동종사자	_____
4.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_____

면담자

구 분	성명	면담여부
연구주체의 장		<input type="checkbox"/> 확인 <input type="checkbox"/> 미확인
연구실책임자		<input type="checkbox"/> 확인 <input type="checkbox"/> 미확인
연구활동종사자	<u>2인 이상 면담 실시</u>	<input type="checkbox"/> 확인 <input type="checkbox"/> 미확인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input type="checkbox"/> 확인 <input type="checkbox"/> 미확인

5. 심사 항목별 심사결과

가. 연구실 안전환경 시스템분야

구 분	1. 운영법규 등 검토		
심사지표	연구실책임자는 국내외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하여 해당 연구실의 운영법규, 안전규정 및 운영방침을 정하여야 하며, 이 법규, 규정 및 방침에는 연구주체의 장의 정책과 목표, 성과개선에 대한 의지가 분명히 제시되고 모든 연구실 구성원에게 공표 되어야 한다.		
심사척도	세부항목	배점	결과
	1. 연구실 운영법규, 안전규정 및 운영방침은 다음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	-
	가. 안전정책과 관련된 법규에서 요구하는 사항 준수 의지	0.2	
	나. 안전정책에 관한 각종 규정 및 지침 등에서 요구하는 사항 준수 의지	0.2	
	다. 연구실 안전환경 확보 및 연구활동종사자 건강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규정·방침 개선 및 실행 의지	0.2	
	라. 연구실의 안전환경 위험 특성 및 연구실 규모에 적합	0.2	
	마. 연구주체의 장의 연구실 안전환경 철학과 연구활동종사자의 참여	0.2	
	2. 연구실 운영법규, 안전규정 및 운영방침을 간결하게 문서화하고 연구주체의 장의 서명과 시행일을 명확하게 적어 연구실의 모든 구성원 및 이해 관계자가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1	
	3.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운영법규, 안전규정 및 운영방침이 연구실에 적합한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최신의 것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합 계	3	

구 분	2. 목표 및 추진계획		
심사지표	연구실책임자는 기관의 목표에 부합하게 연간 안전환경 구축활동 목표를 수립하고 구체적인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시행하여야 한다.		
심사척도	세부항목	배점	결과
	1. 연구실책임자는 연간 안전환경 활동에 대한 목표를 수립하고,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0.5	
	2. 연구실책임자가 목표를 수립할 때에는 안전환경 구축활동 수준평가 결과,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결과, 법규 등 검토사항과 안전환경 활동상의 필수적 사항(교육, 훈련, 성과측정, 내부심사) 및 해당 연구실 구성원이 동의한 그 밖의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0.5	
	3. 안전환경 구축활동은 안전환경 방침에서 추구하는 목표와 일치하여야 한다.	0.5	
	4. 목표 수립 시 목표달성을 위한 연구실 및 인적·물적 지원 범위와 크기를 반영하여야 한다.	0.5	
	5. 안전환경 시스템 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 추진계획을 다음 사항과 같이 수립하고 간결하게 문서화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	-
	가. 연구실의 전체목표 및 세부목표와 이를 추진하고자 하는 책임자 지정	0.2	
	나. 목표달성을 위한 안전환경 구축활동 계획(수단·방법·일정 등)	0.2	
	다. 안전환경 구축활동별 성과지표	0.1	
	6. 연구실책임자는 안전환경 구축활동 추진계획을 최소 연 1회 이상 검토하고 연구실의 운영 변경 또는 새로운 계획의 추가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수정하여야 한다.	0.5	
	합 계	3	

구 분	3. 조직 및 업무분장
-----	--------------

심사지표	연구실 안전환경 구축활동 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기관 내 조직·인력의 업무분장 및 책임 사항이 규정되어야 한다.
------	---

심사척도	세부항목	배점	결과
	1. 연구주체의 장은 해당 연구실에서 연구실 안전환경 시스템이 올바르게 실행 및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점검 확인하여야 한다.	1	
	2.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안전환경 구축활동 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세부 활동별 담당자를 지정하고, 그 역할 및 책임과 권한을 문서화 하여 해당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와 공유하여야 한다.	1	
	3.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 안전환경 시스템의 실행·운영과 개선에 필요한 자원(인적·물적)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구성원에게 교육, 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1	
	합 계	3	

구 분	4.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	---------------

심사지표	<p>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내의 실험기기, 장비, 유해위험물질, 실험방법, 그 밖의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 위험 요인을 스스로 조사하고 그 위험요인을 제거, 감소시키기 위해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수행 하여야 한다.</p>
------	---

심사척도	세부항목	배점	결과
	1.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1	
	2. 연구실책임자는 다음 사항들을 포함하여 성실히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가. 연구실 안전현황	0.2	
	나. 연구활동별(실험·실습/연구 과제별) 유해인자 위험분석	0.2	
	다. 위험요인 제거·감소를 위한 안전계획	0.2	
	라. 비상시 조치계획	0.2	
	마. 연구개발활동안전분석(R&DSA)	0.2	
	3. 연구실책임자는 해당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유해인자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0.5	
	4.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통해 도출된 안전관리 미흡사항을 보완·조치 및 문서화하여 해당 연구실 안전환경 목표에 반영·관리하여야 한다.	0.5	
	합 계	3	

구 분	5. 교육 및 훈련, 자격 등
-----	------------------

심사지표	연구실 안전교육 및 훈련, 자격사항은 규정되어야 한다.
------	--------------------------------

심사척도	세부항목	배점	결과
	1. 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실 안전환경유지 관련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보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교육·훈련 등을 통하여 필요한 능력을 습득하여야 한다. 이때 연구주체의 장 및 연구실책임자는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1	
	2. 유해·위험물질의 잠재위험성 및 안전수칙 등 연구실 안전환경 정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및 자격 관련 절차를 수립·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0.5	
	3. 연구실 환경 및 특성을 반영한 교육 실시·관리 기준을 수립·이행하고 그 실적을 보유하여야 한다.	0.5	
	4. 안전 교육 및 훈련 계획 수립 시 연구실의 위험요인, 연구활동종사자의 업무 또는 연구 특성을 고려하되 다음 사항을 포함 하여야 한다.	-	
	가. 안전환경 방침, 안전환경 시스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할 안전환경 구축·개선활동과 담당자의 역할 및 책임	0.4	
	나.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에 관한 교육과 개선사항	0.3	
	다. 연구실 사고에 대한 비상대응 관련 교육·훈련	0.3	
	합 계	3	

구 분	6. 의사소통 및 정보제공
-----	----------------

심사지표	연구활동종사자들 간에 연구실 안전에 관한 의사소통 및 정보제공이 이루어지고 있어야 한다.
------	---

심사척도	세부항목	배점	결과
	1.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안전환경 시스템 확립을 위하여 연구실 구성원과 이해관계자가 연구실 안전환경 활동에 참여하고 의사소통 및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	
	가.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정보의 종류 및 제공방법(필요 시 전문가 자문 등)	1	
	나. 연구실 안전환경 관련 내·외부 문서 접수처리 및 회신	0.5	
	다. 안전환경 문제 및 활동에 대한 연구활동종사자의 참여 (견해, 개선 아이디어, 관심사항)와 검토 회신	0.5	
	합 계	2	

구 분	7. 문서화 및 문서관리
-----	---------------

심사지표	연구실 안전환경 활동을 위한 문서화 및 문서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

심사척도	세부항목	배점	결과
	1. 연구실은 연구실 안전환경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안전 환경 구축·개선 활동과 관련된 사항을 문서화 하여야 한다.	0.5	
	2. 연구실 안전환경 시스템 관련 사항은 규정화(매뉴얼, 절차서, 지침서 등) 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0.5	
	3. 문서의 생산 및 등록(제·개정 포함), 배포, 폐기 등에 대한 기준을 규정화 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0.5	
	4. 문서는 연구실 환경 변화 및 관련 규정·기준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항상 최신으로 현행화하고 정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0.5	
	합 계	2	

구 분	8. 비상 시 대비·대응 관리 체계
-----	---------------------

심사지표	연구실은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비상 시를 대비한 사고대응 매뉴얼 등 사고관리체계가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	--

심사척도	세부항목	배점	결과
		1. 연구실책임자는 해당 연구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비상사태별 대응 시나리오 및 대책을 포함한 비상조치계획(매뉴얼)을 작성하고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0.5
	2. 연구실책임자는 비상사태별로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비상사태 대응 훈련 후에는 성과를 평가하여 필요 시 비상조치계획을 개정·보완하여야 한다.	0.5	
	3. 비상조치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가. 연구실의 특성(보유 유해인자 등)	0.3	
	나. 사고발생 시 비상조치를 위한 연구실 구성원의 역할 및 수행절차	0.3	
	다. 사고발생 시 각 부서·관련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0.3	
	라. 비상 시 대피절차와 재해자에 대한 구조·응급조치 절차	0.3	
	마.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연간 연구실 교육훈련 계획 및 실적(사진자료 첨부)	0.3	
	4. 연구실 사고 기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0.5	
	합 계	3	

구 분	9. 성과측정 및 모니터링
-----	----------------

심사지표	연구실 안전환경 시스템의 효과 측정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성과 측정 및 모니터링이 실시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	--

심사척도	세부항목	배점	결과
	1. 연구실책임자는 정기적으로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0.5	
	2. 연구실 안전환경 목표 및 추진계획, 연구실 안전환경 시스템, 안전환경 구축·개선 활동 이행 실적 등에 대한 객관적 성과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0.5	
	3. 안전예산 대비 집행 실적 확인이 이루어져야 한다.	0.5	
	합 계	1.5	

구 분	10.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	-----------------

심사지표	연구실은 성과측정 및 평가확인 결과 부적합사항이 발견될 경우 원인을 파악하고 시정조치 또는 예방조치를 절차서에 따라 실행하여야 한다.
------	--

심사척도	세부항목	배점	결과
	1. 성과측정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실행 전, 원인분석을 실시하여 연구실 맞춤형 계획을 마련한다.	0.5	
	2. 성과측정 결과 및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결과 등을 반영하여 적합한 절차에 따라 시정 및 예방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0.5	
	3.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실행 후 적합성 여부를 평가하고 변경사항은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0.5	
	합 계	1.5	

구 분	11. 내부심사
-----	----------

심사지표	연구실 안전환경 구축·개선 활동에 대한 내부심사 및 연구주체의 장 검토가 적합하게 이행되고 있어야 한다.
------	--

심사척도	세부항목	배점	결과
	1. 연구실책임자는 안전환경 구축·개선 활동이 연구실 안전환경 시스템에 따라 적합하게 실행·유지·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1년에 1회 이상 내부심사를 받아야 한다.	0.5	
	2. 내부심사를 위한 심사조직, 심사일정, 심사일자, 심사결과 조치에 대한 사항을 절차서로 작성하고 이 절차서에 따라 내부심사를 실행한다.	0.5	
	3. 내부 심사원은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및 해당 연구실과 이해관계가 없는 인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0.5	
	4. 내부심사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가. 연구실 안전환경 시스템의 적합성	0.3	
	나. 연구실 안전환경 시스템을 통해 제시된 안전환경 목표의 달성여부	0.3	
	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및 성과측정 결과 등에 따른 개선·시정조치 등의 이행내용	0.4	
	5. 내부 심사결과는 보고서로 작성하여 연구주체의장 및 해당 연구실 연구 활동종사자 등에게 전달하고, 시정조치는 요구사항대로 이행되어야 한다.	0.5	
	합 계	3	

구 분	12. 연구주체의 장의 검토 및 반영
-----	----------------------

심사지표	연구주체의장은 연구실 안전관리 시스템 전반에 관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
------	--

심사척도	세부항목	배점	결과
	1. 연구주체의장의 검토는 규정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0.5	
	2. 연구주체의장 검토·보고 시 아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가. 연구실 안전환경 연간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0.3	
	나. 내부심사 지적사항 및 시정결과	0.3	
	다. 연구실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관련 고시에 따른 실시 계획 및 결과	0.2	
	라.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계획 및 개선조치사항	0.2	
	3. 연구주체의 장 검토 결과 지시된 사항은 사후조치 및 관리되어야 한다.	0.5	
	합 계	2	

나. 연구실 안전환경 활동 수준분야

구 분	1. 연구실의 안전환경 일반		
심사지표	연구실은 안전조치, 안전수칙, 안전장치 등 안전관리가 잘 되어 있어야 한다.		
심사척도	세부항목	배점	결과
	<p>1. 출입구 상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연구실에서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 또는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적절한 표시를 하여야 하고, 연구실 출입자를 제한·관리 하여야 한다. - 생물분야 연구실에서는 출입문은 항상 닫아두며, 승인받은 자만 출입 할 수 있도록(BL2 이상 필수) 출입구에는 잠금장치(카드, 보안 시스템 등)를 설치하여야 한다.(BL1, BL2 권장) - 비상시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유도등, 비상구, 출입구 표지 등이 부착되어 있고 장애물을 적재하지 않아야 한다. - 비상시 신속한 구조활동 등을 위하여 연구실 배치도가 부착 되어야 한다. - 폭발성, 인화성, 물반응성, 산화성, 부식성, 급성독성 물질 등 위험 물질을 취급하는 연구실에는 출입구 외 비상구를 1개 이상 추가로 설치하거나 피난 기구를 설치(지하 및 3층 이상인 경우)하여야 한다. 단, 바닥면의 가로 및 세로가 각 3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p>2. 연구실의 안전조치 상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실 바닥은 화학물질에 대한 저항성이 있고,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마감되어야 한다. - 복도 및 통로에 안전통로(폭 90cm 이상, 적재물 없음) 확보하여야 한다. - 비상대피로 및 비상연락처를 비치·게시하여야 한다. - 연구실 내부의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가 양호하여야 한다. - 연구실 내에서 식음료를 섭취·보존하거나, 흡연·취침 행위 등이 금지 되어야 한다. 	3	
	<p>3. 연구실에는 안전관리 규정, 안전·보건 표지 및 실험에 필요한 안전 수칙,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보고서 등이 비치·게시되어 있어야 한다.</p>	1	
	합 계	5	

구 분	2.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상태 확인
-----	----------------------------

심사지표	연구실은 연구실 안전환경 개선을 위하여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하고, 이에 따른 개선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져야 한다.
------	--

구 분	세부항목	배점	결과
심사척도	1. 연구실책임자는 일상점검·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후 도출된 개선 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정기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및 상태확인 실시 - 정기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와 후속조치에 대한 연구활동 종사자 교육 실시	2	
	합 계	2	

구 분	3. 연구실 안전교육 및 사고 대비·대응 관련 활동
-----	------------------------------

심사지표	연구실책임자는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연구실 특성을 고려한 안전교육 및 사고 대비·대응 관련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	--

	세부항목	배점	결과
심사척도	1. 연구실 안전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 및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연구활동 종사자에게 최신의 안전환경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연구실 보유 유해인자 및 연구활동 특성 등을 반영한 안전교육을 별도 시행·관리 하여야 한다. - 연구실 안전교육 실적 기록을 문서화 또는 사진자료로 보관하여야 한다. - 교육 미이수자에 대하여 적절한 사후처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2. 안전사고 대비·대응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한 실험을 위한 실험절차서를 작성·게시 하여야 하고 이행 하여야 한다. - 사고 시 구조·응급조치와 피난·대피 요령에 대한 행동교육 실시 하여야 한다. - 연구실 구성원은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비상조치 역할과 수행 절차를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지 1호 - 5 - 가 - 8 - 연구실 구성원은 연구실 환경에 적합한 피난기구(완강기, 피난 사다리, 구조대 등)와 응급용품(자동제세동기, 비상약품, Spill Kit 등) 등의 사용방법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4	
	합 계	7	

구 분	4. 개인보호구 지급 및 관리
-----	------------------

심사지표	연구실은 개인보호구 등이 적절하게 비치되어 사용·관리되고 있어야 한다.
------	---

심사척도	세부항목	배 점	결 과
	1. 수행하는 연구활동에 맞는 적절한 보호구를 지급·사용하도록 하고 예비품을 비치, 관리하는 등 지급·관리가 제도화되어 있어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의류와 실험복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설정 및 보관함 설치 - 인증이 확인 또는 검증된 적정 개인 보호구 비치 및 지급 (실험용 가운, 작업복, 호흡용보호구(방진 또는 방독마스크 등), 보안경, 보안면, 방열·방한 장갑, 안전화, 전기 감전에 대비한 보호구 등을 연구활동종사자 수에 맞게 비치하고 개인별로 지급) - 보호구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보호구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 - 보호구 사용 전 사용기한과 손상여부 확인 	2	
	2. 연구활동에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화(발등이 노출되지 않음) 및 피부가 노출되지 않는 바지 착용 - 유해물질, 가스, 분진, 소음 등 유해요인과 추락, 낙하, 충돌, 전기 감전 등 위험 요인에 적절한 개인보호구 착용 	2	
합 계	4		

구 분	5. 화재·폭발 예방
-----	-------------

심사지표	화재·폭발을 대비하여 소화기 등 소화시설이 적절하게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 인화성 물질 등 위험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어야 한다.
------	--

심사척도	세부항목	배점	결과
	1. 폭발·화재에 대한 적절한 위험방지 설비·장비(소화기, 소화시설 등)를 구비하고, 점검·보수 계획에 따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실 환경에 적합한 소방 시설·장비 비치 및 관리(소화기 및 방화 담요 등) - 소화기 위치 표시 및 적응성 소화기(A,B,C,D급) 비치·관리(청결상태, 점검표 부착 및 점검여부) - 소화전, 스프링클러, 가스소화설비 보유 및 관리 - 화재경보설비(비상벨, 비상방송 스피커 등)의 설치 및 관리 - 화재감지장치(감지기 등)의 설치 및 관리 - 피난유도 표지, 휴대용 비상조명 등 피난설비의 설치 및 관리 	2	
	2. 위험물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물(인화성, 가연성 등) 과량 보관 여부(18L, 2통 이내 보관) - 위험물 누출 여부 및 점화원 관리 상태 - 위험물질별 저장·보관 및 예방 대책 	2	
합 계	4		

구 분	6. 가스안전
-----	---------

심사지표	고압가스 등이 안전하게 보관, 사용되고 있어야 한다.
------	-------------------------------

	세부항목	배점	결과
심사척도	1. 고압가스용기는 적절하게 고정되어 있고, 가연성가스와 조연성가스는 격리 보관하고 내용물이 적절하게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스용기는 전도방지 설치(공동체결금지, 2개 지점 이상 체결 등) - 충전기한이 경과한 가스용기 사용·보관 금지 - 미사용 가스의 보관 시 안전 캡 사용 - 조연성가스와 가연성가스(수소 등) 분리보관 - 독성가스 사용 시 전용 캐비닛(중화장치, 디텍터, 배기 등) 설치 및 보관 - 역화방지 장치 부착(용접장치 사용 시) - 고압가스(GHS-MSDS, 내용물, 점검표, 안전수칙 등) 표지부착 - 가스용기 직사광선 및 고온 노출 여부 - 가스배관 명칭, 흐름방향, 사용압력 표시 - 고압가스 누출 방지조치 여부 * 고압가스용기는 원칙적으로 실내보관이 금지됨에 따라 실내 보관 시 위 항목과 같이 안전하게 보관·사용되고 있어야 한다.	3	(실내 보관 시 0.5 감점)
	2. 도시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스배관 명칭, 압력, 흐름방향 표시 - 가스배관 부식 상태 여부 - 가스연결 부위(T형 등) 누출 여부 - 가스배관 충격방지 보호 덮개 설치 	1	
	3. 가스 누출에 의한 화재, 폭발 방지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비상시 대피요령을 알고 있어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스누출에 대한 응급조치 매뉴얼 작성 및 숙지 - 가스누출경보기, 가스누출 감지기 등 안전장치 설치 및 작동점검 - 가스누출 방지조치 여부 	1	
	합 계	5	

구 분	7. 연구실 환경·보건 관리
-----	-----------------

심사지표	연구실은 환기장치 등이 적절하게 설치되어 사용되고, 화학물질 등 폐기물이 안전하게 처리 및 관리되고 있어야 한다.
------	---

심사척도	세부항목	배점	결과
	1.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물리적인자(소음, 진동, 유해광선 등) 및 화학적 인자(분진, 유기화합물, 중금속, 산·알카리 등) 등의 유해인자를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적절한 개선조치를 취하고 있어야 한다. - 대상 유해인자 정기 측정결과 기록·관리 여부 - 측정결과에 따른 환경 개선조치 여부	1	
	2. 환기장치가 필요한 곳에는 환기장치가 설치되어야 하고, 적절하게 유지·관리되고 있어야 한다. - 국소배기장치의 설치 상태 - 흡후드 내부에 불필요한 장비와약품 보관 여부 - 국소배기장치 종류에 따른 제어풍속 0.4~1.2 m/s 유지 결과지 확인 및 적정 풍속위치 표시 여부 - 국소배기장치의 수시 점검 및 기록·관리 여부 - 가연성 물질을 취급하는 진공장치 또는 건조오븐에서 발생하는 가스의 후드나 배출구로 방출 여부 - 국소배기장치의 덕트 관리상태(덕트손상, 내부 청소상태 등)	2	
	3. 연구실의 폐기물 처리와 취급하는 폐기물 보관용기는 적정라벨이 부착되어 있어야 하고,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분리 보관하여야 한다. - 폐기물 처리 매뉴얼(규정) 작성 비치 여부 - 폐기물 대장(폐기물 약품명, 폐기물 저장량, 폐기물 처리일자 등) 기록·관리 여부 - 폐기물 보관용기 라벨 부착 및 분리 보관 여부 - 폐기물 저장용기의 적합 여부	2	
	합 계	5	

구 분	8. 화학안전
-----	---------

심사지표	연구실은 화학물질에 대한 누출조치, 예방조치, 보관방법 등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어야 한다.
------	--

심사척도	세부항목	배점	결과
	1. 취급하고 있는 화학물질을 목록화 하고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비치 또는 게시하며 관련규정을 이행하고 있어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비치, 게시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교육 실시 및 숙지 여부 - 화학물질별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검색, 확인이 용이하도록 색인, 목록화 -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최신본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보유 - 화학물질 유출시 대응 매뉴얼 작성 및 숙지 여부 - 연구실험동종사자들은 유해화학물질 및 실험관련 물품의 보관위치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자료의 비치장소 숙지 여부 	1	
	2. 화학물질의 저장, 보관, 사용 등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어야 하고, 안전 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물질은 관리대장 및 입·반출기록, 유효기간, 사용량 등의 관련 규정을 작성하고 기록·관리 - 화학물질의 저장용기의 적합 여부 및 라벨, 경고표지 부착 - 화학물질 전용보관함(전용시약장)의 설치·보관 및 표지 부착(GHS-MSDS) - 화학물질 저장용기의 안전관리 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장용기 밀폐 상태, 바닥보관, 보관위치(눈높이 이하), 전도방지 조치 여부 등 	2	
	3. 화학물질 누출에 의한 중화, 화재, 폭발 방지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보수 점검 계획에 의거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응급조치 요령을 알고 있어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약, 용제류 유출사고 시 흡착제, 중화제(성상별 spill kit) 준비 및 점검 여부 - 비상샤워장치 및 세안장치 등의 안전장비를 설치하고, 담당자를 지정하여 작동상태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 유해화학물질의 취급·보관을 표시하는 표지 부착 - 화학물질의 성상별 분류 보관 - 금속성 및 자연발화성 화학물질의 별도 보관 및 관리상태 - 독성화학물질의 별도 보관 및 관리 - 주요 유해화학물질별 응급조치 요령 작성 및 숙지 	2	
	합 계	5	

구 분	9. 실험 기계·기구 안전
-----	----------------

심사지표	실험 기계·기구별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 안전하게 관리 되어야 한다.
------	---

심사척도	세부항목	배점	결과
	1. 연구실 내 실험기계·기구 기타 설비의 기능과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장치 등을 설치하여 잠재위험이 없도록 하며, 실험기계·기구의 정기적인 보수·점검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험기계·기구의 점검, 보수 및 이력사항 등을 기록한 이력카드의 작성 및 관리 - 실험기계·기구 지침서(사용 설명서) 보유 여부 - 안전장치, 방호장치 및 안전덮개 설치 - 실험기계·기구의 안전수칙, 주의사항 및 작동방법 부착 - 고장이나 수리중 사용금지 표지판 준비 또는 위험 표지 부착 - 실험기계·기구 취급책임자 표시 및 관계자 외 접근금지 표시 - 실험기계·기구의 오일누출, 과열, 진동, 소음상태 등의 정상 작동여부 - 실험기계·기구에 적합한 안전·보건표지 부착 	2	
	2. 연구실 바닥면에 안전구획을 표시하여 실험구역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위험기계 및 기구·장치를 사용할 경우에는 기계 작동반경을 고려하여 울타리 설치 또는 안전구획을 표시하여야 한다.	1	
	3. 연구활동종사자는 사용 기계·장비 별 안전 수칙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레이저 사용 시 레이저 주시 금지 등 	0.5	
	4. 연구실 내 법정검사 대상 기계·기구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 관련법령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기계, 기구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있어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등 	0.5	
	합 계	4	

구 분	10. 전기안전
-----	----------

심사지표	연구실의 전기기계·기구 및 전기시설 등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어야 한다.
------	--

심사척도	세부항목	배점	결과
	1. 전기로 인한 감전 등 사고방지를 위해 배선 상태나 접지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보수하는 등 안전활동을 수행하고 있어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기계·기구 및 전기시설의 방호조치 여부(접지여부, 절연상태, 노후 및 손상상태 등) - 정격전류 초과 사용(문어발식 콘센트 등) 및 바닥 내 이동전선 몰드 처리 여부 - 전기기계·기구 및 전기시설의 점검·보수 여부 	2	
	2. 전기기계·기구 및 전기시설 등 전기로 인한 화재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고 있어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습기가 많거나 정전기로 인한 화재·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된 전기기기 방호조치 여부(방폭구조 등) - 차단기, 멀티콘센트 등의 전기용량 적합 사용 여부 - 개인 전열기 비치 및 사용 여부 - 분전반, 스위치 등 각종 전기 표시 명칭 부착 관리상태 및 충전부 감전방지 조치 	1.5	
	3. 국소배기장치의 전기안전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폭등 정상 작동 및 파손 여부 - 국소배기장치 내부 전기콘센트 등 위치 확인 	0.5	
	합 계	4	

구 분	11. 생물안전(생물안전등급 1~2등급 적용)
-----	---------------------------

심사지표	연구실의 생물실험이 안전하게 수행되고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있어야 한다.
------	---

	세부항목	배점	결과
심사척도	1. 취급 생물체로 인한 감염 및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험 시 유의 사항 및 응급 상황 시 조치방법 등을 숙지·준수 하고 있어야 한다. - 생물학적 실험 오염 요인의 제거 및 방지(에어로졸 발생 최소화 등) - 취급 생물체의 위험도 및 특성 등을 고려한 전용 보호구의 치·착용 - 취급 생물체 및 관련 시약·기구 등에 대한 위험도, 특성, 감염·누출 등 응급 상황 시 조치 요령 숙지	1	
	2. 취급하고 있는 생물체가 누출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 관리하고 있어야 한다. - 취급 생물체 보관 관리 대장 작성 및 보관 - 취급 생물체 특성에 적합한 보관 방법(동결, 냉장 등) 및 용기 사용 - 보관용기의 관리상태 및 경고표지 부착 - 생물체 관련 폐기물(의료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관리 (고압멸균 등을 통한 폐기물의 생물학적 활성 제거 여부, 의료 폐기물(사체, 혈액, 주사기 등) 전용용기 사용 및 보관 장소의 적절성 여부 등)	2	
	3. 취급 생물체에 적합한 연구설비 및 장비 등을 관련 규정에 맞게 설치·관리하고 있어야 한다. - LMO 연구시설 신고 여부(LMO 취급 시) 및 설치·운영 관련 기록의 유지·관리 - BSC, 멸균기 등 생물연구시설 등급에 적합한 안전관리 시설·장비 등의 설치·보유 및 성능점검·관리 - 연구실 출입문, 장비 등에 생물안전 표지 부착 - 곤충이나 설치류 등의 연구실 유입 방지 방안 마련	1	
	4. 연구실은 바이러스 등의 유해 생물체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연구활동 종사자들에게 적절한 안전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 유해 생물체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연구활동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실시 및 기록관리 - 취급 병원체에 대한 백신이 있는 경우 접종 여부	1	
	합 계	5	

다. 연구실 안전관리 관계자 안전의식 분야

구 분	1. 연구주체의 장
-----	------------

심사지표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 안전관련 사항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
------	-------------------------------------

심사척도	세부항목	배 점	결 과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과 법령 미 이행시 행정처분 사항을 알고 있어야 한다.	1	
	2. 연구실 안전환경 운영방침 및 활동목표를 알고 있어야 한다.	1	
	3. 연구실 안전환경 운영을 위한 전년도 안전예산 집행내역 및 당해년도 예산내역을 알고 있어야 한다.	1	
	4.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운영절차와 적용 후 예상효과를 알고 있어야 한다.	1	
	5. 인증제도에서 요구하는 연구실 안전환경 활동에 대한 주요 검토내용을 알고 있어야 한다.	1	
	합 계	5	

구 분	2. 연구실책임자
-----	-----------

심사지표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안전관련 사항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
------	------------------------------------

심사척도	세부항목	배점	결과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을 알고 있어야 한다.	1	
	2.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시스템을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 추진계획을 알고 있어야 한다.	0.5	
	3.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시스템의 운영절차와 예상효과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한다.	0.5	
	4.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시스템의 업무분장을 알고 있어야 한다.	0.5	
	5. 해당 연구실의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방법과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한다.	0.5	
	6. 해당 연구실의 중요한 매뉴얼, 절차서, 지침서의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한다.	0.5	
	7. 연구실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소속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안전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0.5	
	8. 비상조치 사항을 알고 있어야 한다.	0.5	
	9. 내부심사 결과에 대하여 시정조치하고 소속 연구활동종사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0.5	
합 계	5		

구 분	3. 연구활동종사자
-----	------------

심사지표	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실 안전관련 사항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
------	-------------------------------------

심사척도	세부항목	배점	결과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을 알고 있어야 한다.	1	
	2. 연구실 사고현황과 연구실 안전환경 목표를 알고 있어야 한다.	0.4	
	3.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시스템 운영상의 업무분장을 알고 있어야 한다.	0.4	
	4. GHS-MSDS 등 연구실 안전관련 자료의 활용과 비치장소를 알고 있어야 한다.	0.4	
	5.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활동에 참여하여야 하고 잠재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0.4	
	6. 비상조치계획에서 담당역할을 알고 있어야 한다.	0.3	
	7. 연구실에서의 유해위험물질 취급방법을 알고 있어야 한다.	0.3	
	8. 실험 전 안전점검 사항을 알고 있어야 한다.	0.3	
	9. 담당업무에 관한 연구실 안전수칙을 알고 있어야 한다.	0.3	
	11.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및 내부심사 등 연구실 안전교육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한다.	0.3	
	12. 취급하고 있는 유해위험물질에 대하여 유해위험성 정도와 취급절차를 알고 있어야 한다.	0.3	
	13. 비상사태 발생 시 조치 사항을 알고 있어야 한다.	0.3	
	14. 개인보호구 착용기준과 착용방법 등을 알고 있어야 한다.	0.3	
	합 계	5	

구 분	4.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	---------------

심사지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연구실 안전관련 사항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
------	--

심사척도	세부항목	배점	결과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을 알고 있어야 한다.	1	
	2. 법정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알고 있어야 한다.	1	
	3.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시스템의 내용과 실행효과를 알고 있어야 한다.	1	
	4.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시스템을 실행하기 위한 연간 연구실 안전환경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경과를 연구주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0.5	
	5. 내부심사 결과와 조치사항에 대한 추진상황 등을 알고 있어야 한다.	0.5	
	6.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계획수립 및 추진결과를 연구주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0.5	
	7.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방법 및 조치내용을 알고 있어야 한다.	0.5	
	합 계	5	